

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8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낮은 차량등록 기준대수를 이용한 신규사업체 등록 과열방지와 자동차대여사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자동차대여사업 차량등록기준 하한대수 15대를 30대로 조정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(별첨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3. 4. 17. ~ 5. 8.) 결과,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(2023. 5. 24. ~ 5. 26.) 심의결과,
원안의결

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5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**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15대”를 “30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)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소,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평창군에 소재하고, 평창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<u>15대</u>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30대</u> ----- ---</p>

관계법령 발취

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제61조(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)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6] <개정 2021. 9. 24.>

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(제61조 관련)

항 목	등 록 기 준
1. 등록기준 대수	가. <u>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: 50대 이상</u> 나. 주사무소,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에 소재하고,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<u>시·군에서</u> 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: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</u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장 김은규
연락처	(033) 330 - 2019